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65

발의연월일: 2024. 6. 18.

발 의 자:한병도ㆍ이성윤ㆍ박희승

임오경 • 박정현 • 강경숙

이기헌 · 강선우 · 김병기

진선미 • 박지혜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전후휴가 또는 90일 이하의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하며(최초 60일은 유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10일의 유급 휴가(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기간(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60일을 초과한 일수)과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하여 통상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저출생이 심화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출산·육아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

산휴가의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이에 맞추어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기간을 함께 조정할 필요가 있는바,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의 경우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현행 5일에서 15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2호 및 제76조제1항제1호·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병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564호)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2호 본문 중 "60일"을 "90일"로, "75일"을 "120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1호 단서 중 "60일"을 "90일"로, "75일"을 "120일"로, "45일"을 "60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5일"을 "15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	
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	
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	
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	
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	
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	
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	
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	2
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	
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u>60일</u>	<u>90일</u>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u>75일</u>)이 지	120일

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제75조 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 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 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 액을 지급한다.

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기간.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휴가 기간 중 60일(한 번에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하되, 한 번에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경우에는 45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정한다.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1
<u>90일</u>
1900
1 <u>20일</u>
<u>60일</u>
<u> </u>

-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 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 가 기간 중 최초 5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 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 정한다.
- ②・③ (생 략)

2
15일
②·③ (현행과 같음)